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 | | |
|-----|------|-------------------------|
| 단위명 | 대상직급 | 평가기간 |
| | | 20 ~ 20 |

| 평가 대상자 | | | | | | |
|--------|----------------|--------|------|------------|-----------------------|------------------------|
| 순위 | 평가단위 등 급 | 성 명 | 근무부서 | 직책 또는 담당업무 | 평가자 원점수 (등급/점수) | 비 고 (상/하향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평가자 | | | | | |
|--------|----|----|----|----------|----|
| 구분 | 직위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일자 |
| 확인자 | | | | | |
| 평가자 | | | | | |
| 평가자 | | | | | |
| 평가자 | | | | | |
| 평가자 | | | | | |
| 평가자 | | | | | |
| 평가자 | | | | | |

작성요령

1. 평가단위 등급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평가단위내 순위를 조정하면서 부여한 등급을 기재한다.
2. 평가자 원점수는 별지4호에 따른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종합평가등급과 점수를 기재한다.
3. 비교란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상향 또는 하향으로 기재한다.
 - 상향평가: 주요공적 등록자, 주요보직, 특수업무실적, 조직기여 등
 - 하향평가: 주요과오 등록자, 징계처분, 조직발전 저해 등
4.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하게 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대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위의 조직내 비중, 평가대상 공무원들간 성과의 상대적인 차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합니다.
 - 동일한 평가대상공무원군에 대해서는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등급 및 평가점수가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통보한다..